



## <2025년 변경되는 주요내용>

### 1. 최저임금 인상 (2025. 1. 1 시행)

기 존	2025년 시행
- 시급 : 9,860원 - 월급 2,060,740원 : 1일8시간, 1주40시간 기준	- <b>시급 : 10,030원</b> - 월급 2,096,270원 : 1일8시간, 1주40시간 기준

### 2. 육아기/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 변경 (2024. 10. 22. 시행)

현 행	2025년 시행
- 육아기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하였음	- 육아기,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<b>모두 '출근'</b> 한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

### 3. 출산전후휴가기간 조건부 확대 (2025. 2. 23 시행)

현 행	2025년 시행
- 출산전후휴가 90일 (다태아일 경우 120일)	- 출산전후휴가 90일 (다태아일 경우 120일) - <b>미숙아 출산의 경우 100일 부여</b>

### 4.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기간 확대 (2025. 2. 23 시행)

현 행	2025년 시행
-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	-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<b>32주 이후</b>

### 5. 배우자출산휴가기간 확대 (2025. 2. 23 시행)

현 행	2025년 시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휴가기간: 10일</li> <li>- 분할횟수: 1회</li> <li>- 사용기한: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휴가기간: <b>20일</b></li> <li>- 분할횟수: <b>3회</b></li> <li>- 사용기한: <b>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</b></li> </ul>

### 6.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(2025. 2. 23 시행)

현 행	2025년 시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간: 연간 3일</li> <li>- 유급기간: 최초 1일</li> <li>- 비밀유지: -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간: <b>연간 6일</b></li> <li>- 유급기간: <b>최초 2일</b> (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)</li> <li>- <b>비밀유지: 난임치료휴가 관련 누설금지 의무</b></li> </ul>

### 7. 육아휴직기간 조건부 확대 (2025. 2. 23 시행)

현 행	2025년 시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간: 1년</li> <li>- 기간확대요건: -</li> <li>- 분할: 2회 (단,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분할사용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간: 1년 + <b>6개월</b></li> <li>- <b>기간확대요건: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<b>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</b></li> <li>② <b>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</b></li> <li>③ <b>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</b></li> </ol> </li> <li>- 분할: <b>3회</b> (단,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분할사용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)</li> </ul>

### 8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확대 (2025. 2. 23 시행)

현 행	2025년 시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자녀: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</li> <li>- 기간: 1년 +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 가산</li> <li>- 분할 시 최소기간: 3개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자녀: <b>만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</b></li> <li>- 기간: 1년 +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<b>2배</b></li> <li>- 분할 시 최소기간: <b>1개월</b></li> </ul>